

# 2024 아동분야사업안내(지침) 주요변경사항 (아동그룹홈 운영관련 부분 발췌)

전국 그룹홈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무국입니다.

우리협의회는 현장의 의견을 모아, 올해 아동분야사업안내(이하 지침) 개정의견을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가정형 보호의 중요성과 아동그룹홈의 원활한 운영·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우리 협의회가 제안한 개정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현안들이 남아 있기에, 우리 협의회 회장단, 임원(이사, 지부장, 감사, 지부임원 등)들은 그룹홈 구성원들이 함께 잘 성장하고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이 그룹홈 관련지침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변경 사항만 기재함. 세부 변경 사항은 본문 확인 / '비고' 내용 중 일부 협의회 추가설명이 들어가 있음.

사업명	페이지	2023년	2024년	비고
I.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	13	<b>보호조치</b>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쉼터포함),가정위탁,입양기관등)	<b>보호조치</b> <b>(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쉼터포함),양육시설,입양기관등)</b>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순서 변경
VI.아동 복지 시설 운영	198	○자립지원시설 - 지원 대상: 보호종료 아동 중 취업(우선), 취업 준비 중, <b>24세</b>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지원시설 - 지원 대상: 보호종료 아동 중 취업(우선), 취업 준비 중, <b>29세</b>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4세까지 당연 보호연장 가능함에 따라 입소가능 연령상향
	202	○자립지원시설 - <b>24세</b> 이하까지 이용가능	○자립지원시설 - <b>29세</b> 이하까지 이용가능	

사업명	페이지	2023년	2024년	비고
	207	<p>(2)「아동복지법」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p> <p>※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설 보호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아동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 생략 가능(재학(재원)증명서로 증빙)</p>	<p>(2)「아동복지법」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b>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b>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p> <p>※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설 보호 아동 중 <b>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b>에서 실시하는 아동 안전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 생략 가능(재학(재원)증명서로 증빙)</p>	<p>아동복지시설 중 이용자가 18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교육제외</p> <p>교육생략 대상에 고등학교 명확하게 규정</p>
	213	<p>○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p> <p>(1)아동그룹홈생계급여 및 주거급여관리방안</p> <p>□</p> <p>- 시설회계로 편입 시, 세입예산과목은 입소비용수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과목은 아동의 직·간접비용으로 사용되는 사업비(운영비, 교육비, 기타사업비) 및 공공요금, 보험료로 편성하여 사용 가능</p> <p>- 주거급여는 공동생활가정의 기타운영비(임차료)로 지출 가능하며, 임차료로 지출시 시설회계로 산입</p>	<p>○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p> <p>(1) 아동그룹홈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관리 방안</p> <p>□</p> <p>- 시설 회계로 편입 시, 세입예산과목은 입소 비용 수입으로 편성(예 <b>산과목구조상 입소비용수입으로 편성하나, 시설 이용료는 아님</b>)하고, 세출예산과목은 아동의 직·간접비용으로 사용되는 사업비(운영비, 교육비, 기타사업비), <b>운영비(수용비 중 아동을 위한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소규모수선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중 보험료 및 아동을 위해 사용하는 기타운영비)</b>로 편성하여 사용 가능</p> <p>- 주거급여는 공동생활가정의 <b>기타 운영비(임차료) 및 시설보수비용 등으로 지출 가능하며, 관련 지출시 시설회계로 산입</b></p>	<p>아동그룹홈이 무료 시설임을 명확하게 규정</p> <p>생계 및 주거급여 사용범위 확대</p>
	216	<p>다. 후원자연계 및 후원금 관리 행정사항</p> <p>-</p> <p>-</p> <p>-</p> <p>-&lt;신설&gt;</p>	<p>다. 후원자연계 및 후원금 관리 행정사항</p> <p>-</p> <p>-</p> <p>-</p> <p>- <b>지자체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시설 아동 간 후원금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b></p>	<p>시설 아동 간 후원금 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지자체 관리 의무 신설</p>

사업명	페이지	2023년	2024년	비고																																																																																																																	
	219	4.시설 보호아동 지원 및 관리  <신설>	4.시설 보호아동 지원 및 관리  차.시설보호 아동 용돈 지원 - 아동복지시설에서보호중인아동에 대한용돈지원권고 ※자자체별용돈지원현황 (2024.1월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시도</th> <th colspan="5">월지원기준</th> </tr> <tr> <th>미취학</th> <th>초등</th> <th>중등</th> <th>고등</th> <th>대학생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서울</td> <td></td> <td>3만원</td> <td>5만원</td> <td>6만원</td> <td>10만원</td> </tr> <tr> <td>부산</td> <td></td> <td>2만 2천원</td> <td>3만</td> <td>4만 3천원</td> <td></td> </tr> <tr> <td>대구</td> <td></td> <td>1만 5천원</td> <td>3만원</td> <td>4만원</td> <td>6만원</td> </tr> <tr> <td>인천</td> <td>1만 3천원</td> <td>1만 5천원</td> <td>2만 5천원</td> <td>3만원</td> <td></td> </tr> <tr> <td>광주</td> <td></td> <td>3만원</td> <td>4만원</td> <td>5만원</td> <td></td> </tr> <tr> <td>대전</td> <td></td> <td>1만 5천원</td> <td>3만원</td> <td>4만원</td> <td></td> </tr> <tr> <td>울산</td> <td colspan="5">미지원</td> </tr> <tr> <td>세종</td> <td></td> <td>1만 5천원</td> <td>3만원</td> <td>4만원</td> <td>5만원</td> </tr> <tr> <td>경기</td> <td></td> <td>1만 5천원</td> <td>2만원</td> <td>4만원</td> <td></td> </tr> <tr> <td>강원</td> <td colspan="5">미지원</td> </tr> <tr> <td>충북</td> <td colspan="5">미지원</td> </tr> <tr> <td>충남</td> <td></td> <td>1만원</td> <td>3만원</td> <td>5만원</td> <td>10만원</td> </tr> <tr> <td>전북</td> <td>1만원</td> <td>1만 5천원</td> <td>3만원</td> <td>4만원</td> <td>4만원</td> </tr> <tr> <td>전남</td> <td></td> <td>3만원</td> <td>5만원</td> <td>8만원</td> <td>14만원</td> </tr> <tr> <td>경북</td> <td></td> <td>1만 6천원</td> <td>2만원</td> <td>2만 5천원</td> <td></td> </tr> <tr> <td>경남</td> <td colspan="5">미지원</td> </tr> <tr> <td>제주</td> <td></td> <td>3만원</td> <td>5만원</td> <td>7만원</td> <td></td> </tr> </tbody> </table>	시도	월지원기준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이상	서울		3만원	5만원	6만원	10만원	부산		2만 2천원	3만	4만 3천원		대구		1만 5천원	3만원	4만원	6만원	인천	1만 3천원	1만 5천원	2만 5천원	3만원		광주		3만원	4만원	5만원		대전		1만 5천원	3만원	4만원		울산	미지원					세종		1만 5천원	3만원	4만원	5만원	경기		1만 5천원	2만원	4만원		강원	미지원					충북	미지원					충남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전북	1만원	1만 5천원	3만원	4만원	4만원	전남		3만원	5만원	8만원	14만원	경북		1만 6천원	2만원	2만 5천원		경남	미지원					제주		3만원	5만원	7만원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용돈지원권고 사항신설 및 지자체별 지원기준 공시
시도	월지원기준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이상																																																																																																																
서울		3만원	5만원	6만원	10만원																																																																																																																
부산		2만 2천원	3만	4만 3천원																																																																																																																	
대구		1만 5천원	3만원	4만원	6만원																																																																																																																
인천	1만 3천원	1만 5천원	2만 5천원	3만원																																																																																																																	
광주		3만원	4만원	5만원																																																																																																																	
대전		1만 5천원	3만원	4만원																																																																																																																	
울산	미지원																																																																																																																				
세종		1만 5천원	3만원	4만원	5만원																																																																																																																
경기		1만 5천원	2만원	4만원																																																																																																																	
강원	미지원																																																																																																																				
충북	미지원																																																																																																																				
충남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전북	1만원	1만 5천원	3만원	4만원	4만원																																																																																																																
전남		3만원	5만원	8만원	14만원																																																																																																																
경북		1만 6천원	2만원	2만 5천원																																																																																																																	
경남	미지원																																																																																																																				
제주		3만원	5만원	7만원																																																																																																																	
	226	- 그룹홈 면적, 입지 조건, 재정 능력, 보호대상아동 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 여부 결정  <신설>	- 그룹홈 면적, 입지 조건, 재정 능력, 보호대상아동 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 여부 결정 ※ 지자체는 보호아동의 안정적 생활공간 제공을 위해, 내지역본부등을 통해 공공주택이 그룹홈에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그룹홈 시설로 공공주택 활용지원 명시																																																																																																																	
	231	바.시설안전관리 ※ 자세한사항은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매뉴얼,참조(보건복지부누리집-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바.시설안전관리 ※ 자세한사항은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매뉴얼,참조(보건복지부누리집-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b>아동생활시설 관련 매뉴얼 마련중으로 매뉴얼 완료시 별도 안내 예정</b>	아동생활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안내 사항 추가																																																																																																																	

사업명	페이지	2023년	2024년	비고
	243	-지자체 장은 필요한 경우 ADHD,경계선 지능 아동 등도 아동 2명당 1명의 종사자 배치 권고	-지자체 장은 필요한 경우 ADHD, 경계선 지능, <b>장애</b> 아동 등도 아동 2명당 1명의 종사자 배치 권고	종사자 추가 배치기준으로 장애아동을 명시적으로 추가
	244	<신설>	※ <b>지역 여건상 배치 직종 대상자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직종 채용 때까지 유사 직종으로 지원 가능(시설에서 임상심리상담원 채용을 위한 공고절차 등을 진행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등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으로 생활복지사 또는 상담지도원으로 지원 가능)</b>	시설 상황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종사자 지원기준 유연하게 적용
	247	가.종사자 근로 환경 등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담당 공무원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비치, 취업규칙 마련, 노사협의회 구성 여부 등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의 시행 여부를 확인·점검	가.종사자 근로 환경 등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비치, 취업규칙 마련, 노사협의회 구성 여부 등 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의 시행 여부를 확인·점검  ※ <b>다만, 공동생활가정 등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근로 기준법 적용</b>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예외 사항 적용 가능

사업명	페이지	2023년	2024년	비고
	248	나.종사자인권보호 <신설>	<p>종사자 보호를 위한 시설 이용자 수칙 활용 가능</p> <p>-수칙 예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아동의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li> <li>-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 할 권리</li> <li>- 학습권, 문화권, 놀이권 생활을보호 등을 가질 권리</li> <li>- 선생님과 상호 존중할 권리</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아동의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과 선생님이 함께 정한 규칙을 준수할 의무</li> <li>- 아동과 선생님의 물품과 시설재산을 보호할 의무</li> <li>- 긍정양육을 위한 선생님의 요청에 협조할 의무</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안전과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은 시설내에서 안전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li> <li>- 아동은 시설내에서 위험한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li> <li>- 아동은 시설 내에서 다른 아동이나 선생님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li> </ul> <p>○ 인권 존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은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li> <li>- 아동은 선생님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li> <li>- 아동은 선생님을 차별하지 않습니다.</li> </ul> <p>○ 의사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li> <li>- 아동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li> </ul> </div>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예시 신설
	250	라. 종사자 교육 「아동복지법」 제55조에 따른 종사자교육 훈련 실시를 위하여 지자체는 종사자 교육비 및 여비 지원	라.종사자교육 「아동복지법」 제55조에 따른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를 위하여 지자체는 종사자 교육비 및 여비 <b>및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b>	종사자 교육 지원 명확하게 개정

사업명	페이지	2023년	2024년	비고
	254	(마) 신규 채용(2020년4월 이후)의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동 학대전력,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등인건비 지원 제외 권고	(마) 아동이 생활하는 시설에서 신규채용(2023년 10월 이후)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의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동학대 전력*,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인건비 지원 제외 권고 <b>* 단,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전력이 있더라도 동일한 건에 대해 수사 또는 사법기관의 무혐의·무죄 등(불송치, 불기소 등 포함) 사실을 소명한 자는 제외</b>	무죄나 무혐의 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255	나.운영비 지원 ※〈신설〉	나.운영비 지원 <b>※ 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주말, 명절 등 일시 방문시 운영비 등을 활용하여 숙식 제공 가능</b>	자립준비청년 방문 시 소요비용을 운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 명시
	256	(1)신규지원시설 단, 해당 지자체의 아동양육시설이폐쇄되는 경우 동일 지역내에서아동을 수용하기 위해 그룹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별 해당 연도 확정 예산 내에서 가용한 예산(인건비, 운영비)으로 지원 가능	(1)신규지원시설 단, 해당 지자체의 아동양육시설이 폐쇄되는 경우 동일 지역내에서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 그룹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b>또는 지역내 그룹홈 확충이 필요하여 설치된 경우</b> 등은 지자체별 해당 연도 확정 예산내에서 가용한 예산(인건비,운영비)으로 즉시 지원가능	신규시설 지원 판단 시 지자체 재량 강화
	257	(2) 대표자 변경 및 비영리법인 전환시설 등 ○ 불가피한 사정, 개인 또는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해당 시설이 현재 위치에 존속 필요성 - 종사자의 변동 및 고용승계 - 보호아동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 가능	(2) 대표자 변경 및 비영리법인 전환 시설 등 ○ 불가피한 사정, 개인 또는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b>다음사항을 기준으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 결정</b> - 해당 시설이 현재 위치에 존속필요성 - 종사자의 변동 및 고용승계 - 보호아동의 변동이 없는 경우	문구 명확하게 수정

사업명	페이지	2023년	2024년	비고
	258	<p>나. 지원기준</p> <p>*0~2세 ADHD, 경계선지능 아동 등 중에서 지자체 장의 결정으로 2인으로 산정 가능</p> <p>**〈신 설〉</p>	<p>나. 지원기준</p> <p>*0~2세 ADHD, 경계선지능 <b>장애아</b> 동 등 중에서 지자체 장의 결정으로 2인으로 산정 가능</p> <p><b>**현원이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 등을 지자체가 판단하여 운영비는 전액 지원 가능</b></p>	<p>장애아동을 명시적으로 추가</p> <p>아동 산정 기준 명확하게 수정</p> <p>공동생활가정 지원액 감경 기준 완화 (불가피한 현원 감소 시에도 운영비 전액 지원 가능)</p>
	259	<p>다. 인건비</p> <p>(1) 지원단가: 32,125천원(인.연간)</p> <p>(2) 집행기준</p> <p>○ 시설에 교부하는 인건비 총액에서 4대보험 기관 부담금 및 종사자퇴직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인원수에 맞게 배분</p> <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1항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퇴직금 및 4대보험 등을 보육사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p> <p>○ 〈신설〉</p> <p>○ 신규채용(2020.4월이후)의 경우</p> <p>-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거나 아동학대 전력,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은 인건비 지원 제외</p>	<p>다. 인건비</p> <p>(1) 지원단가: <b>33,576천원(인.연간)</b></p> <p>(2) 집행기준</p> <p>○ 시설에 교부하는 인건비 총액에서 4대보험 기관 부담금 및 종사자 퇴직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인원수에 맞게 배분</p> <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1항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퇴직금 및 4대보험 등을 보육사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p> <p><b>○ 시설장 및 보육사 등 종사자 인건비는 시설별 지급 기준에 따라 차등 산정 가능, 단 보육사 최저기본급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1 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중 생활지도원 1호봉의 95% 이상으로 산정해야함</b></p> <p>○ <b>신규채용(2023년10월 이후)의 경우</b></p> <p>-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거나 <b>아동학대 전력*</b>,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은 인건비 지원 제외</p> <p><b>* 단,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 전력이 있더라도 동일한 건에 대해 수사 또는 사법기관의 무혐의 무죄 등 (불송치, 불기소 등 포함) 사실을 소명한 자는 제외</b></p>	<p>2024년 인건비 지원단가 반영</p> <p>시설별 인건비 산정방식 및 최소 인건비 기준 신설</p> <p>인건비 지원조건 일부 변경사항 반영</p>

사업명	페이지	2023년	2024년	비고
	260	라.운영비 ○ 지원단가 : 470천원/개소.월 ○ 집행기준 - - - ※〈신설〉	라. 운영비 ○ 지원단가 : 470천원/개소.월 ○ 집행기준 - - - ※ <u>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주말, 명절 등 일시 방문시 운영비 등을활용하여숙식제공가능</u>	자립준비 청년 방문 시 소요 비용을 운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 명시
	261	〈신 설〉	<u>바.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u>	시도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설치 권고, 향후 국비 예산 확보 시 모범적인 지자체에 우선 지원 예정 *내용은 본문 참조
보호아동 면접교섭 지원 매뉴얼	323	〈신설〉	<u>* 아동의 면접교섭 대상자가 아동에게 심리 정서적 불안을 야기하거나 아동이 보호자와의 만남 이후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 보호자 상담을 진행하거나, 필요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다.</u>	
	326	나.아동의적응단계별서비스제공방향 〈신설〉	나.아동의 적응단계별 서비스 제공 방향 <u>- 필요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은 원가정 상담(아동발달,특성, 아동학대, 면접교섭 시 주의사항 등)을 통해 가족이 아동의 현재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함</u>	
	330	다. 각 시·도에서는 매월말 기준으로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우리부로 제출하여야한다	<u>다. 각 시·도에서는 분기별로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u>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적 관리